



※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(http://www.hillstate-elife-mj.co.kr)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사업과 - 17801호(2023.11.02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- 사업명 :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사업
- 공급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
-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(공동주택) 지하 2층~지상 18층 14개동, 총 1,2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일반분양 299세대(조합원 분양 888세대, 임대주택 70세대, 보류지 84세대 포함) (일반(기권추진) 특별공급 26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50세대, 노부모양양자 특별공급 6세대, 생애최초 특별공급 22세대 포함)
- 입주시기 : 2024년 09월 예정(정확한 일정 추후 통보)
- 공급대상 (단위:㎡,세대)

주택구분	주택관리번호	주택형태(전용면적 기준)	약식표기	주택공급면적(㎡)			기타공용면적(이하주차장등)	계약면적	세대별대지비	총공급세대수	특별공급						일반공급세대수	최대층수	
				주거용면적	주거공용면적	소계					일반(기권추진)	다자녀	신혼부부	노부모양양자	생애최초	생애최초			생애최초
민영주택	2023.000562	01	049.9200A	49A	049.9200A	18,9427	68,8627	36,3482	105.2109	27,9806	72	7	7	12	2	6	34	38	10
		02	049.4000B	49B	049.4000B	18,5627	67,9262	35,9696	103.8958	27.6000	112	11	11	20	3	10	55	57	8
		03	059.9400A	59A	059.9400A	22,5127	82,4527	43,6440	126.0967	33.5026	21	2	2	3	0	1	8	13	18
		04	059.8700B	59B	059.8700B	20,8343	80,7043	43,5930	124.2973	32.7920	43	4	4	7	1	3	19	24	8
		05	074.9500A	74A	074.9500A	26,4924	101,4424	54,5733	156.0157	41.2184	6	0	0	1	0	0	1	5	6
		06	074.4300C	74C	074.4300C	28,4059	102,8359	54,1946	157.0305	41.7846	6	0	0	1	0	0	1	5	1
		07	074.4300D	74D	074.4300D	28,3959	102,8259	54,1946	157.0205	41.7806	19	1	1	3	0	1	6	13	3
		08	074.9600E	74E	074.9600E	26,9150	101,8750	54,5805	156.4555	41.3942	17	1	1	3	0	1	6	11	3
		09	074.9600F	74F	074.9600F	26,8950	101,8550	54,5805	156.4355	41.3862	3	0	0	0	0	0	0	3	-
합계										299	26	26	50	6	22	130	169	57	

II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

주택형태(전용면적 기준)	타입	세대수	동별/라인별	층구분	세대수	분양가격			계약금(10%)	중도금(50%)			잔금(40%)	
						대지비		건축비		계약시	1차(10%)	2차(20%)		3차(20%)
						대지비	건축비				2024.02.15	2024.04.15		2024.06.17
049.9200A	49A	72	102동-1~5호, 8호 103동-1호, 4~5호 108동-1~2호, 5호 114동-3~5호	1층	7	399,143,000	336,457,000	735,600,000	73,560,000	73,560,000	147,120,000	147,120,000	294,240,000	
					2층	7	404,297,000	340,803,000	745,100,000	74,510,000	74,510,000	149,020,000	149,020,000	298,040,000
					3~4층	15	409,398,000	345,102,000	754,500,000	75,450,000	75,450,000	150,900,000	150,900,000	301,800,000
					5~9층	29	411,406,000	346,794,000	758,200,000	75,820,000	75,820,000	151,640,000	151,640,000	303,280,000
					10~14층	8	413,577,000	348,623,000	762,200,000	76,220,000	76,220,000	152,440,000	152,440,000	304,880,000
					15~18층	6	415,530,000	350,270,000	765,800,000	76,580,000	76,580,000	153,160,000	153,160,000	306,320,000
049.4000B	49B	112	102동-6~7호 103동-2~3호 108동-3~4호 114동-1~2호	1층	8	392,903,000	331,197,000	724,100,000	72,410,000	72,410,000	144,820,000	144,820,000	289,640,000	
					2층	8	397,949,000	335,451,000	733,400,000	73,340,000	73,340,000	146,680,000	146,680,000	293,360,000
					3~4층	16	402,941,000	339,659,000	742,600,000	74,260,000	74,260,000	148,520,000	148,520,000	297,040,000
					5~9층	40	405,003,000	341,397,000	746,400,000	74,640,000	74,640,000	149,280,000	149,280,000	298,560,000
					10~14층	25	407,119,000	343,181,000	750,300,000	75,030,000	75,030,000	150,060,000	150,060,000	300,120,000
					15~18층	15	409,018,000	344,782,000	753,800,000	75,380,000	75,380,000	150,760,000	150,760,000	301,520,000
059.9400A	59A	21	101동-1호, 4~7호 106동-6~8호 111동-1호, 5~8호	1층	9	476,084,000	401,316,000	877,400,000	87,740,000	87,740,000	175,480,000	175,480,000	350,960,000	
					2층	12	482,216,000	406,484,000	888,700,000	88,870,000	88,870,000	177,740,000	177,740,000	355,480,000
					3~4층	16	465,612,000	392,488,000	858,100,000	85,810,000	85,810,000	171,620,000	171,620,000	343,240,000
					5~9층	3	471,581,000	397,519,000	869,100,000	86,910,000	86,910,000	173,820,000	173,820,000	347,640,000
					3~4층	16	477,604,000	402,596,000	880,200,000	88,020,000	88,020,000	176,040,000	176,040,000	352,080,000
					5~6층	16	479,992,000	404,608,000	884,600,000	88,460,000	88,460,000	176,920,000	176,920,000	353,840,000
074.9500A	74A	6	104동-4호, 112동-3호 109동, 113동-3~4호	1층	6	574,188,000	484,012,000	1,058,200,000	105,820,000	105,820,000	211,640,000	211,640,000	423,280,000	
					1층	1	570,932,000	481,268,000	1,052,200,000	105,220,000	105,220,000	210,440,000	210,440,000	420,880,000
					2층	1	578,529,000	487,671,000	1,066,200,000	106,620,000	106,620,000	213,240,000	213,240,000	426,480,000
					3~4층	2	586,180,000	494,120,000	1,080,300,000	108,030,000	108,030,000	216,060,000	216,060,000	432,120,000
					5~7층	2	589,273,000	496,727,000	1,086,000,000	108,600,000	108,600,000	217,200,000	217,200,000	434,400,000
					1층	3	573,700,000	483,600,000	1,057,300,000	105,730,000	105,730,000	211,460,000	211,460,000	422,920,000
074.4300C	74C	6	112동, 113동-2호	2층	3	581,297,000	490,003,000	1,071,300,000	107,130,000	107,130,000	214,260,000	214,260,000	428,520,000	
					3~4층	6	588,948,000	496,452,000	1,085,400,000	108,540,000	108,540,000	217,080,000	217,080,000	434,160,000
					5~6층	7	591,986,000	499,014,000	1,091,000,000	109,100,000	109,100,000	218,200,000	218,200,000	436,400,000
					2층	3	577,661,000	486,939,000	1,064,600,000	106,460,000	106,460,000	212,920,000	212,920,000	425,840,000
					3~4층	6	585,204,000	493,296,000	1,078,500,000	107,850,000	107,850,000	215,700,000	215,700,000	431,400,000
					5~7층	8	588,242,000	495,858,000	1,084,100,000	108,410,000	108,410,000	216,820,000	216,820,000	433,640,000
074.9600E	74E	3	104동, 109동, 113동-1호	7~9층	3	589,404,000	495,996,000	1,084,400,000	108,440,000	108,440,000	216,880,000	216,880,000	433,760,000	

※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60조에 의거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,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별 내용, 층별, 좌/우면적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함 금액으로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※ 편입 및 인접과장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이버버전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- 일반(기권추진)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36조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의 10% 범위) : 26세대
 - 대상자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간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신분 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간의 인정서류를 받은 날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)
 - ※ 청약자격요건: 청약대상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/면적별/예치금액 이상) 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
- 다자녀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0조: 공급 세대의 10% 범위) : 26세대
 - 대상자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대상 가입요건을 갖춘 청약대상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/예치금액 이상
 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이여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 - 자녀수에는 태어나 임양자녀도 포함됩니다.
 - 태어나 임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임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0조제3항)
 -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'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'에 따릅니다.
- 신혼부부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1조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 세대의 18% 범위) : 50세대
 - 대상자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1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)으로서 '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'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 - * 단,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.12.11.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
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대상 가입요건을 갖춘 청약대상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/예치금액 이상
 -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,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상 양 친양자의 경우 임양관계 증명서 상 임신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한다.
 -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확인서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 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소 및 부적처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된다.(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 - 소득기준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40%이하면(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
 - 자산기준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억3,1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 -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'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'에 따릅니다.
- 노부모양양자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6조: 공급 세대의 3% 범위) : 6세대
 - 신청자격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배우자의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)
 - * 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.
 - 청약대상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- 세대주일 것 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
 - *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양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(다자녀가구 및 노부모양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라 피양양자 및 피양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
 - * 배우자 분리제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 - *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 - *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대상 가입요건을 갖춘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
- 생애최초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3조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 세대의 9% 범위) : 22세대
 - 신청자격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 - * 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.
 - 청약대상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- 세대주일 것 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
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임양)를 포함, 혼인 중인 이년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알릴 수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*
 - * (1인 가구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(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) 미혼인 자녀(혼인 중인 이년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도 없는 신청자. 1인 가구는 추정제대로 청약가능하며, 단독세대(태어났거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)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,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에 한하여 청약가능
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(과거 1년 내에 소득세/소득세법,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합함)를 납부한 자를 포함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,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, 세액감면 등도 납부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
 - 소득기준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60% 이하인 자
 - 자산기준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억3,1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정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
 - * 배우자 분리제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 - *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대상 가입요건을 갖춘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

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- 신청자격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(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)을 대상으로 주택별 청약순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.
 - *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요건을 갖춘 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. (2순위 청약가능)
 - *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.
 - 청약대상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- 세대주일 것
 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-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
-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

구분	순위	주택형	청약관련 신청자격
민영주택	1순위	전용 60㎡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용면적 60㎡ 이하: 가점제(40%) 및 추첨제(60%) 적용.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.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(가점제 접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.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잔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.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잔액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전환한 자.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.
		전용 60㎡초과 85㎡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용면적 60㎡ 이하: 가점제(70%) 및 추첨제(30%) 적용.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.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(가점제 접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. ② 청약부